

## 요 약

- ▶ 최근 주택경기의 회복으로 인하여 건설 및 주택 시장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,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하여 건설기업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악화되어 있음.
- ▶ 이러한 경영 여건을 반영하여 건설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도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.
  - 2008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건설기업의 법인세는 연속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.
  -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외에도 건설 및 주택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여 과중한 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.
- ▶ 최근 건설기업의 경영 여건과 건설 및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, 향후 건설기업의 세 부담 여력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음.
- ▶ 최근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법인세 인상의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으나, 기업에 대한 세제는 국가 경제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 투자 환경 조성 및 합리적인 세정을 통한 건전한 성장에 목표를 둘 필요가 있음.
- ▶ 건설기업들의 경영이 이처럼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,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세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함으로써 건설 및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.
- ▶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자 건설 및 주택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10개의 개선 과제를 제시함.
  - ① PF 대출 관련 대위변제의 손금 인정
  - ② 「지방세법」상 건축물의 범위 기준 완화
  - ③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 불산입 규정의 완화
  - ④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환류세제 공제
  - ⑤ 기부채납 목적 취득 자산의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감면
  - ⑥ 주택사업 공여지 분리과세 적용 기준 추가 정립
  - ⑦ 재정비사업 초기 투자금액 비용 인정
  - ⑧ 국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
  - ⑨ 분양 대행 용역을 부수 용역으로 인정
  - ⑩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한 과세 규정 완화
- ▶ 조세제도의 취지와 세정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되, 건설 및 주택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저해가 되는 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.